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10423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피고와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1. 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 F동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양수금채권

E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E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H는 2018. 7. 5. 원고에게 E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7. 23. E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E를 상대로 2018. 10. 29. 'E는 원고에게 30,553,432원과 그중 12,336,270원에 2018.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8. 12. 18.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69587호).

나. E와 피고의 증여계약

E는 2003. 4. 2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 북구 I아파트, J호(이하 '제1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717,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1. 26. 제1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그의 처인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후 E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년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E는 2019. 12. 2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1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20. 1. 3.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액 1,625만 원을 받았다.

피고는 2020. 1. 3. K와 부산 북구 L아파트, M호(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 20.부터 2022. 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와 함께 제2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는 지인인 N에게서 1,8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K에게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E는 2020. 1. 6. 피고와 1,6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N에게 상환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외에 O카드 등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1,600만 원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E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E는 채무초과 상태인데도 2020. 1. 6.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1,600만 원을 증여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금전을 증여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제1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세대주만 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E 명의로 임차하였을 뿐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E와 결혼할 때 가져온 돈과 피고가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피고의 재산이다.

E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1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1,625만원 중 1,6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은 위에서 보았고, 이러한 사실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수영